

인터넷 무역거래시 계약 성립에 관한 법적 문제

Legal Problems of the Contract Formation by Internet Trade

南珍祐(Nam, Jin-Woo)*

요 약 (ABSTRACT)

현재 세계적으로 전자적 정보매체중 인터넷의 여러 기술적 방편인 Web, E-Mail, usenet 등을 통한 인터넷 무역이 보편화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의 부가가치통신망(VAN)을 이용한 EDI에서 보다 보편적이며 접근이 용이하면서 개방적인 인터넷 EDI로 대체되고 있다. 인터넷을 이용한 무역계약의 체결은 기존 방식에 비해 신속성, 경제성, 편리성에 있어 뛰어난 장점을 지니고 있어 조만간 많은 이용이 뒤따를 것으로 예견되나 현재 준거법, 문서의 법적효력, 계약의 유효성, 청약의 유인, 계약성립시점 등의 법적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계약성립시점에 관하여 인터넷을 통한 승낙의 의사전달이 대화자간인지, 격지자간인지의 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대화자간 법리와 격지자간법리의 구분기준은 발신과 도달의 시간적 동시성을 기준으로 분석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는 현재 인터넷을 이용한 의사전달 중 가장 많은 이용이 예상되는 E-Mail을 중심으로 기타 인터넷기술을 이용한 의사전달의 효력발생시점에 관한 법리를 분석하고 만일 대화자간의 법리가 적용된다면 문제시될 도달시점에 대해서 논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살펴보았을 때, 인터넷을 통한 승낙의 의사전달은 대화자간의 법리가 적용되어 영·미법이나 한국, 일본법이 준거법으로 채택된다 하더라도 도달주의가 지지되어야 하며, 이 경우 도달시점은 E-Mail의 경우 수신측 사용자 컴퓨터가 아닌 수신자가 지정한 수신서버컴퓨터에 기록되는 시점이 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Key Word : 인터넷무역, 인터넷계약, 계약성립시점, WEB EDI, INTERNET EDI

<목

- I. 서론
 - 1. 연구의 목적 및 기대효과
 - 2. 연구범위 및 방법
- II. 인터넷 무역의 개념 및 입법현황
 - 1. 인터넷 무역의 개념 및 현황
 - 2. 인터넷 무역관련 입법동향과 계약관련 규정
 - (1) UNCITRAL MODEL LAW

차>

- (1) 대화자간 및 격지자간의 기준해석 문제
- (2) 인터넷 의사전달매체의 유형
- 2. 인터넷 의사표시의 발신시점
- 3. 인터넷 의사표시의 도달시점과 시간적 동시성
 - (1) 기술적 측면
 - (2) 법적 측면

* 경남대학교 경영학부 강사

(2) 유럽의 입법현황	IV. 인터넷 무역계약의 계약성립시점의 고찰
(3) 미국의 입법현황	1. 무역계약의 성립시기
(4) 우리나라의 입법현황	2. 인터넷 무역거래의 계약성립시기
III. 인터넷 의사전달의 발신시점과 도달시점	V. 결론
1. 인터넷 의사표시의 성질에 관한 구별기준	* 참고문헌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기대효과

오랜 기간동안 상거래업무를 보조하는 의사전달 방법으로서의 정보매체는 지속적인 변화를 통하여 발전되어 왔다. 우편이나 전보를 통한 의사전달은 전화, 텔레스를 통하여 격지자간에 있어 실시간 의사전달의 효과를 나타나게 되었고, 팩시밀리(Facsimile)의 등장은 서류의 전자적 전달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후 부가가치통신망(Value-Added Network :VAN)을 통한 전자자료교환(Electronic Data Interchange :EDI)의 등장은 종이없는 전자서류전달(Paperless Trade)을 가능하게 하여 종이서류를 전자적인 자료를 이용하는 전자적인 방식의 무역거래를 가능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무엇보다도 본격적인 매체의 혁신은 다중 개방형 네트워크인 인터넷의 등장으로 볼 수 있다. 인터넷은 기존의 폐쇄적 네트워크 환경을 개방적인 네트워크 환경으로 변화하게 만들었으며, 인터넷의 대중화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접근이 용이해져 VAN EDI에서 Internet EDI 또는 Web EDI시대로의 전환을 예고하게 되었고, 이러한 인터넷을 통한 무역거래는 본격적인 전자무역거래(Electronic Trade)시대를 도래하게 만들었다.

인터넷을 이용한 무역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인터넷을 통한 의사전달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인터넷을 통한 청약과 승낙, 인터넷을 통한 무역계약의 체결, 웹을 이용한 전자신용장 개설, 웹사이트를 통한 운송계약과 운송서류발행, 웹을 이용한 보험계약과 보험서류발행, 웹을 이용한 통관업무수행, 웹사이트에서의 매입행위 등의 업무가 활성화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최근 국내에서도 몇몇 웹사이트를 선두로 Web EDI가 출현하고 있어¹⁾ 이러한 예상을 현실로 만들어 가고 있다.

현재 가장 활성화 되어 있는 인터넷 무역관련 업무는 계약체결과정까지의 절차로서 시

1) Web EDI에 관련된 국내 웹사이트로서 데이콤 EC 사업본부에서 운영중인 eCommerce 웹사이트 (www.tradebiz.net)가 현재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운영중인 서류업무로서는 Booking, S/R, B/L, Invoice, Manifest, L/C 등과 관련된 서류를 들 수 있고, 이외에 Vessel Schedule, Cargo Status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조사, 신용조사, 거래조회, 청약과 승낙같은 의사표시의 전달 등을 들 수 있다. 이미 거래당사자들의 인터넷을 통한 의사전달은 상당한 정도에 이르고 있어, 추후 계약의 성립과 관련된 법적 내용이 필요하게 될 것으로 여겨진다.

인터넷을 통한 무역계약 체결은 현실적인 무역업무에서 청약과 승낙 그리고 계약서 작성의 절차를 거치게 될 것으로 여겨지지만, 계약자의 영업소재지와 준거법, 인터넷 데이터의 법적 효력, 인터넷을 통한 계약의 유효성, 계약성립절차상의 문제점, 인터넷을 통한 무역계약의 계약성립시점 등의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이중 계약성립시점에 관해서는 발신주의로 채택될 경우에는 발신시점이, 도달주의로 채택될 경우에는 도달시점이 추가로 문제시 될 수 있어, 이의 명확한 기술적 분석과 법적 분석이 필요하게 된다. 또한 기존 전자상거래 관련 법규들이 규정한 효력발생시점에 관한 규정들의 명확한 해석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인터넷을 통한 무역계약의 체결과정상의 효력발생시점에 관련된 논의와 명확한 발신시점과 도달시점에 관한 기술적·법적 분석을 통하여 향후 인터넷을 통한 의사전달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점에 따른 명확한 해석기준을 마련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인터넷의 혁명에 힘입어 본격적으로 출현하게 될 인터넷 무역업무는 기존 무역업무나 VAN을 이용한 서류전달에 비해, 저렴성, 신속성, 편리성의 특징을 지니고 있어 앞으로 많은 이용이 기대되는 부분이다. 본 연구의 결과로 밝혀진 내용들은 인터넷을 통한 무역계약체결시 계약성립시점에 관한 해석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추후 인터넷 무역관련 법규의 등장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본 논문에서는 연구범위를 인터넷을 통한 무역계약체결에 관련된 법적 문제로 한정하되, 특히 인터넷을 통한 무역계약의 성립과 관련된 발신시점과 도달시점의 분석을 통한 계약의 유효한 성립시점의 적용법리와 해당 시점의 분석을 연구의 주 대상으로 삼는다. 본 논문이 가지고 있는 주제에 따른 접근방법은 기술적인 측면과 법적인 측면을 상호 연계하여 발신시점과 도달시점의 정확한 기준과 대화자간 계약법리와 격지자간 계약법리의 설정기준과 해당 기준을 통해 본 인터넷을 통한 무역계약의 계약성립시점을 문헌적 연구를 중점으로 하되 관련 법규분석 및 인터넷 기술분석을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연구의 내용을 효율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제2장에서는 인터넷 무역계약의 의의와 현황편을 두어 인터넷 무역에 관련된 개념 정의를 내리고, 이와 관련하여 현재 추진 중인 중요 프로젝트를 소개한다. 또한 이 장에서는 이후 논의될 인터넷 무역계약과 관련하여 관련 법규를 해당 법규들이 규정하는 계약관련 법규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제3장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의사전달의 발신시점 및 도달시점과 관련하여 인터넷 의사표시의 성질에 대한 구별기준을 대화자간 및 격지자간의 기준해석 문제로 풀이하고, 인터넷

의사전달매체의 유형분석과 이에 따른 발신시점 및 도달시점을 인터넷 기술분석을 중심으로 서술하여 인터넷을 통한 의사표시의 발착 동시성을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인터넷 무역계약의 계약성립시점과 관련하여 현실 무역계약의 성립시기에 대해서 고찰하고, 이를 기초로 한 인터넷 무역거래의 계약성립시점을 분석한 후에, 제5장에서 본 논문의 결론을 맺고자 한다.

II. 인터넷 무역계약의 의의 및 현황

1. 인터넷 무역의 개념 및 현황

인터넷을 포함한 여러 전자적인 통신매체를 통한 상거래를 통상적으로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EC)로 정의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로 여겨지며, 이러한 전자상거래는 기업대 소비자간, 기업대 기업간, 기업대 정부간 등으로 분류되고 있다. 전자무역거래는 전자상거래 중 기업대 기업간의 전자적인 매체를 이용한 국제적인 거래방식으로 불려지고 있으며, 현재 인터넷의 특징상 국경이란 개념이 모호한 것으로 여겨지게 되면서, 국내거래와 국제거래의 구분 없이 기업간의 전자적인 거래를 전자거래(Electronic Trade)라고 지칭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무역(Internet Trade)이라는 용어는 여러 전자적 거래방식 중 사용자 중심의 개방적 네트워크인 인터넷의 웹(Web), 전자메일(E-mail), 뉴스그룹(Usenet) 등의 방식을 이용하여 기존 무역의 모든 부분, 즉 인터넷을 통한 무역계약체결, 웹을 이용한 전자신용장 개설, 웹사이트를 통한 운송계약 체결과 운송서류발행, 웹을 이용한 보험계약체결과 보험서류발행, 웹을 이용한 통관업무수행, 웹사이트에서의 매입(Negotiation)행위 등의 무역관련 업무가 수행되는 것으로 정의를 내리고자 한다.

현재 인터넷 무역과 관련된 모든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이중 일부 부분은 활성화되어 있으나 일부 부분은 여전히 문제점이 남아 있어 그 실행에 제약이 따르고 있다. 특히 전자신용장과 주요 선적서류 중 운송서류 부분은 그 특징상 개방적 네트워크인 인터넷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힘든 부분 중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양도가능 선하증권의 전자화의 실행가능성을 실험하는 볼레로 프로젝트(BOLERO Project)가 전세계적으로 테스트를 실시하여 그 유효성 확인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볼레로 프로젝트는 선하증권과 수출입관련 무역선적서류를 전자화하여 그 전자데이터의 중앙일괄등록·인증에 의한 전자적 유일성의 확보 및 중앙등록기관에 의한 전자서명의 발행, 인증에 의한 배서양도 등 전자적 유통성의 가능성 검증을 목적으로 한 실험이다.²⁾ 볼

2) 財經詳報社, 「金融情報システム白書」, 平成10年版, p. 14. ; 최석범, "글로벌전자무역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제14권 제1호, 한국국제상학회, 1999. p.262.

레로 프로젝트는 자체의 규정(BOLERO Rule Book)을 통해서 전자적 무역업무를 실행하며 이의 검증을 위해 전세계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아시아 설명회가 2000년에 개최될 예정으로 있다.

전자신용장과 관련하여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는 1995년 전자무역결제시스템 합동위원회를 해산하고 “ICC Project E-100”을 발족하였다. 그리고 1997년 4월에 “Electronic Commerce Project(ECP)”로 그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ECP내에는 3개의 작업그룹인 전자무역관습(Electronic Trade Practices), E-Terms, 정보보안(Information Security)으로 나누어 연구중이다.³⁾ 이중 전자무역관습 작업그룹은 전자판매계약모델 및 신용장의 전자화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는 바, 작업그룹의 신용장 전자화의 연구결과물이 추후 전자신용장의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인터넷 무역관련 입법동향과 계약관련 규정

(1) UNCITRAL MODEL LAW

UN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 사무국은 EDI 및 관련통신수단의 법적 측면에 관한 모델법초안(Draft Model Law on Legal Aspects of Electronic Data Interchange and Related Means of Communication)의 작성을 위한 EDI에 관한 작업그룹을 구성하여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하여 1995년 제28차 UNCITRAL 작업그룹회의에서 모델법 초안을 마련하였다.⁴⁾ 이후 1996년 5월 28일부터 6월 14일까지 뉴욕에서 UNCITRAL 제29차 위원회가 개최되어 이 초안이 심의되어 최종적으로 전자상거래에 관한 UNCITRAL 모델법⁵⁾(이하에서 모델법으로 약칭)으로 채택되었다.

모델법은 전체가 2부 17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모델법은 이후 각국의 전자상거래 관련법규의 제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본 논문에서는 모델법에 있어 계약관련 조항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모델법 제11조에서는 계약의 유효성 및 성립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는 경우 외에는, 청약과 승낙은 데이터 메시지의 방법에 의해서 표시될 수 있다. 계약의 성립에 데이터 메시지가 사용된 경우, 그러한 계약은 계약 성립을 위하여 데이터 메시지가 사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유효성과 구속력이 부인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여 계약의 유효성이 단지 데이터 메시지가 사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부정될 수 없음을 명문화하고 있다.

또한 모델법 제12조에서는 “데이터 메시지의 작성자와 수신자 사이에서 의사의 표시나 다른 기재는 단지 데이터 메시지의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그 법적 효력, 유효성, 구속력이 부인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데이터 메시지의 유효성 및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하고 있다.

3) 최석범, 상계논문, p. 258.

4) 財經詳報社, 전계서, p. 25.

5) 유엔무역법위원회의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

모델법 제13조에서는 데이터 메시지의 귀속과 관련하여 작성자가 송신한 데이터 메시지는 작성자의 것으로 귀속됨을 명확히 함으로써 작성자가 송신하였더라도 작성자 본인이 작성하지 않았다는 반론제기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⁶⁾

모델법 제15조에서는 데이터 메시지의 송·수신 장소와 시간에 대한 규정으로 본 논문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계약성립시점상의 발신시점과 도달시점의 문제를 논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 본 조에서는 송신과 관련하여 “작성자와 수신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데이터 메시지의 송신(발송)시점은 송신된 데이터 메시지가 작성자 또는 그 작성자를 대리하여 그 데이터 메시지를 발신한 대리인의 지배를 벗어나서 어떤 정보시스템에 들어간 때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수신과 관련하여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수신시점은 다음에 의하여 결정된다. (a) 수신자가 데이터 메시지 수신을 위한 독자의 정보시스템을 지정한 경우, (i) 데이터 메시지가 지정된 정보시스템에 들어오거나, (ii) 지정된 정보시스템이 아닌 수신자의 다른 정보시스템으로 데이터 메시지가 송신된 경우에는 수신자에 의하여 데이터 메시지가 취득된 때가 데이터 메시지의 수신시점이다. (b) 수신자가 정보시스템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수신자의 정보시스템에 들어간 때가 수신시점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본고의 제3장에서 발신시점 및 도달시점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기로 하겠다.

(2) 유럽의 입법현황

유럽의 각국들은 나름대로 전자상거래 법률을 초안작성에 박차를 가하였는데, 몇몇 국가를 예를 들면 우선 영국은 민간차원에서 전자상거래협회(UK Electronic Commerce Association)를 설립하고 전자상거래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지도와 해결책을 모색, 제시하고 있다. 또한 독일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정보 및 통신서비스의 일반적 조건규제에 관한 법률의 초안을 마련하여 전송서비스, 자료보호, 전자서명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제정 및 개정을 포함하여 연구하고 있다.⁷⁾

최근 유럽연합의 위원회에서는 각 회원국들이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를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 유럽내부시장에서 장벽이 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각 법제도의 접근 및 통일화를 기하기 위해서 1998년 11월 18일에 전자상거래에 관한 입법지침초안⁸⁾을 발표하였다. 이 초안은 “유럽정보사회의 진흥”이라는 유럽연합정책의 핵심을 이루

6) 추가적인 보완으로 작성자가 데이터 메시지를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7) 이상진·이충배 공저, 「전자상거래 이해와 활용」, 두남, 1999, p. 363.

8) Vorschlag für eine Richtlinie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über bestimmte rechtliche Aspekte des elektronischen Geschäftsverkehrs im Binnenmarkt - KOM (1998) 586 endg. v. 18. 11. 1998, ABIEG Nr. C 30 v. 5. 2. 1999, S. 4 ff.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의 자료 참조 : Brisch, EU-Richtlinienvorschlag zum elektronischen Geschäftsverkehr, CR 1999, 235-244; Hoeren, Vorschlag für eine EU-Richtlinie über E-Commerce, MMR 1999, 192-199; Lehmann, Rechtsgeschäfte und Verantwortung im Netz - Der Richtlinienvorschlag der EU-Kommission, ZJUM 1999, 180-184; Maennel, Elektronischer Geschäftsverkehr ohne Grenzen - der Richtlinienvorschlag der Europäischen Kommission, MMR 1999, 187-192; Spindler, Verantwortlichkeit

게 될 것으로 보인다.⁹⁾

본 입법지침초안의 경우 역외시장에서도 비슷한 규정으로 정의될 가능성이 존재하여 본 논문에서 논의될 계약관련 규정을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입법지침초안의 제9조 1항에서는 전자계약의 유효성과 관련하여 계약이 전자적 방식으로 체결되었다고 하여 이를 무효로 보거나, 법적 효력을 부여하지 않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UNCITRAL 모델법과 마찬가지로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초안에 의하면 계약성립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 1) 제공자가 청약을 하고, 2) 청약이 소비자에게 도달하고, 3) 소비자가 승낙하고, 4) 승낙이 제공자에게 도달하고, 5) 제공자가 승낙수신에 대한 확인을 하고, 6) 수신확인이 소비자에게 도달하고 7) 제공자의 수신확인을 소비자가 수신하였다는 확인을 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고 규정하여 상대적으로 복잡성을 띠고 있다.¹⁰⁾ 또한 이는 기업대 소비자간의 전자계약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업대 기업간의 거래에도 그대로 적용될지는 의문이다. 지침에서는 도달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발송되어 그 상대방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가능성만 있으면 되고, 실제로 그 내용을 확인할 필요는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본 논문이 서술하게 될 도달시점의 기준에 중요한 근거자료가 될 수 있다.

(3) 미국의 입법현황

미국의 경우는 기존의 통일상법전(UCC)에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규정들을 추가 제정하여 이용하려는 추세에 있다. 미통일 주법위원회(National Conference of Commissioners on Uniform State Laws:NCCUSL)와 미국법협회(The American Law Institute)가 주축이 되어 UCC 제2B편 초안을 마련하였는 바, 이는 정보, 컨텐츠, 소프트웨어, 온라인 서비스, 데이터베이스, 전자출판, 디지털 영화, 디지털음악, 기타 유사 저작권 사업에 관한 거래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특히 라이센스와 소프트웨어계약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¹¹⁾ 또한 전자자금이체(EFT)와 관련하여 UCC 제4A편에서 명문규정을 두고 있다.

von Dienstanbietern nach dem Vorschlag einer E-Commerce-Richtlinie, MMR 1999, 199-207; Waldenberger, Electronic Commerce : der Richtlinievorschlag der EG-Kommission, EuZW 1999, 296-303.

9) 지금까지 발표된 이 정책의 구성부분을 이루는 입법지침들은 다음과 같다 : 원거리판매입법지침 (Richtlinie 97/7/EG, ABIEG Nr. L 144 v. 4. 6. 1997, S. 19 ff.), 저작권입법지침초안(Dok. Kom (97) 628 endg.), 데이터베이스의 보호에 관한 입법지침(Richtlinie 96/6/EG, ABIEG Nr. L 77 v. 27. 3. 1996, S. 20 ff.), 전자서명에 관한 입법지침초안(ABIEG Nr. C 325 v. 23. 10. 1998, S. 5 ff.), 진입통제를 받는 제공자("conditional access systems")의 법적보호에 관한 입법지침 (Richtlinie 98/84/EG, ABIEG Nr. L 320 v. 28. 11. 1998, S. 54 ff.) 그리고 소위 투명입법지침 (Transparenzrichtlinie; Richtlinie 98/34/EG, ABIEG Nr. L 204 v. 21. 7. 1998, S. 37 ff.; Richtlinie 98/48/EG, ABIEG Nr. L 217 v. 5. 8. 1998, S. 18을 통하여 개정) 등이 있다.

10) 이 절차의 복잡성에 대하여, 승낙에 대한 확인서를 보내는 것은 큰 노력없이 가능하다는 설명이 있다. 그 이유로서 확인서의 발송을 자동적으로 하게 할 수 있으며, 실제로도 실무에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11) 최경진, 「전자상거래와 법」, 현실과 미래, 1998, pp. 76-77.

UCC 제2B편에서는 계약자유의 원칙과 관련하여 UNCITRAL 전자상거래 모델법의 원칙을 그대로 이어서 당사자 자치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으며, 전자계약의 준거법과 관련하여 준거법이 계약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인정하여 계약법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은 컴퓨터정보거래(Computer Information Transaction)를 UCC 제2B편으로 공표하지 않기로 발표하고 NCCUSL에서 컴퓨터정보거래에 관한 통일법(Uniform Computer Information Transaction)의 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¹²⁾

통일법의 제정 이후에 논의되어야 하겠지만, 통일법은 UNCITRAL의 전자상거래 모델법과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여겨지지는 않는다.

(4) 우리 나라의 입법현황

우리 나라는 1998년 7월과 8월에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이 제정되어 전자서명법은 1999년 2월 5일, 전자거래기본법은 동년 2월 8일에 각각 공포되어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전자거래기본법은 UNCITRAL의 전자상거래 모델법을 초안으로 작성되어 있어 각 규정들이 모델법의 내용들을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다.

계약관련 법규들은 UNCITRAL 모델법의 규정과 동일하므로,¹³⁾ UNCITRAL 모델법을 분석하게 되면 우리나라 전자거래기본법의 적용과 해석에 대한 이해가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본 논문에서 발신시점과 도달시점의 명확한 법적 해석을 위해 우리나라 전자거래기본법의 조항도 참고하고자 한다.

III. 인터넷 의사전달의 발신시점과 도달시점

1. 인터넷 의사표시의 성질에 관한 구별기준

(1) 대화자간 및 격지자간의 기준해석 문제

무역계약서 승낙의 의사표시에 대한 효력발생시기로서 대다수의 법규들은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반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한국법, 일본법, 영·미법에서는 의사표시 전달수단으로서 대화자간과 격지자간을 구별하여 격지자간의 승낙의 의사표시는 해당 승낙이 발신할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본 논문 4장에서 논의될 인터넷 무역계약의 효력발생시점에 대해서 논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인터넷 의사표시의 성질이 격지자간인지 대화자간인지의 여부가 중요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 격지자간인지 대화자간인지의 판단기준은 거리적, 장소적 관념에 의해서가

12) <http://www.ali.org/ali/pr040799.htm>; 박복재, “전자상거래 관련법 비교연구”, 「1999년도 학계학술발표대회 학술발표논문집」, 한국국제통상정보학회, 1999, pp. 56-57.

13) 「전자거래기본법」 제5조 - 제12조 참조.

아니라 시간적 관념에 의해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보는 견해¹⁴⁾와 거리적, 장소적, 시간적 관계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간의 직접적 통화나 신호에 의한 것인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되어 있는 실정이다.¹⁵⁾

본 논문을 통해 지지하는 학설은 전자의 경우이다. 판단기준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립된 법규나 판례를 통해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기존의 경우 대화가간의 범주에 대면, 전화, 텔레스가 포함되며, 격지자간의 범주에 우편이나 전보가 포함된다. 후자의 경우 '신호'의 정의에 따라 논란이 제기될 우려가 존재한다. 시간적 관념에 의한 판단기준으로 간주하여 구별하여 보면 대면거래나 전화, 텔레스의 경우는 시간적 동시성이 존재하는데 반하여, 우편이나 전보의 경우는 시간적 동시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어 그 구분이 명확하다.

시간적 동시성이란 발신시점과 도달시점간의 시간적 간격의 차이가 미세한 경우를 일컫는 것이지 완전한 동시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사실상 기술적으로 전화나 텔레스의 경우도 완전한 동시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며 사람이 느낄 수 없는 미세한 시간적 격차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미세한 격차는 사람이 인지할 수 있을 정도의 간격은 아니므로 시간적 동시성이 존재한다고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비록 이를 사람이 인지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우편이나 전보와 같이 그 격차가 장기간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시간내 이루어지는 경우 시간적 동시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2) 인터넷 의사전달매체의 유형

인터넷을 통한 무역거래시 의사전달 매체의 유형을 분석하는 것은 의사전달의 발신시점과 도달시점의 분석을 통한 시간적 동시성을 분석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기존의 VAN EDI의 경우 제3자로서의 중계기관인 VAN사업자를 통한 의사전달로서 단일된 방식이었다면, 인터넷은 현재 웹서비스(web service)가 가장 보편화된 방식이긴 하지만 웹 이외에도 많은 방식으로 분류될 수 있어 각각의 매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게 된다.

인터넷을 통한 의사전달의 형태는 전자메일(E-Mail), 웹을 이용한 전자게시판(Web Board), 뉴스그룹(Usenet), 채팅(Chatting), 인터넷 폰(Internet Phone), 인터넷 화상회의시스템 등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전자메일(E-Mail)의 경우는 두 가지의 형태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 POP Server를 기반으로 한 메일로서 일반적인 형태로 볼 수 있다. POP메일은 E-Mail프로그램을 통해서 E-Mail을 보내고 체크하는 방식으로 대다수의 기업참가자들은 이러한 방식의 E-Mail을 이용할 것이다. 둘째는 IMAP(Internet Message Access Protocol)을 기반으로 한 웹메일(IMAP-based web mail)을 볼 수 있다. 이는 주로 웹서비스를 구축한 웹서버의 E-Mail주소

14) Micheal S. Baum and Henry H. Permitt, "Electronic Contract", *Publishing and EDI Law*, willy publishing, 1991. p. 324.

15) 오병철, "전자적 의사표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12, p. 131.

를 이용하는 것으로 웹상에서 E-Mail을 보내고 체크하게 된다. POP E-Mail의 경우도 웹을 통해 메일을 확인할 수 있으나 이는 웹의 CGI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용자의 POP서버에 접근하여 해당 메일을 보여주는 것으로 IMAP E-Mail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재 가장 보편화된 방식의 인터넷 의사전달수단이 바로 E-Mail인 점을 감안해 볼 때, E-Mail전달의 기술적 체계의 분석은 E-Mail의 발신시점과 도달시점 및 발착의 동시성을 분석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웹(Web)을 기반으로 하는 전자게시판(BBS)이나 뉴스그룹(Usenet)은 VAN과는 다른 기술적 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해당 적용법리에 있어서는 VAN과 유사한 형태로 간주할 수 있다. 이는 제3자로서의 중계기관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는 바, Web Server나 Usenet Server를 운영하는 기관이 중계기관이 되어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중계기관의 Server에 기록되면서 전달되게 된다. 그러나 VAN의 메일 사서함(Mail Box)에 기록되게 만드는 VAN EDI의 형태는 IMAP E-Mail과 같은 성질을 지니고 있어 전자게시판(BBS)과 뉴스그룹(Usenet)같이 모두에게 모든 문서가 공개되는 형태와는 차이를 보일 수 있다. 현실적으로 전자게시판(BBS)이나 뉴스그룹(Usenet)은 그 접근이 모두에게 허용되어 있어 기업간의 계약관련 의사전달 수단으로서 많은 이용이 있을 것으로 여겨지지는 않는다. 다만 다수의 피청약자를 상대로 한 자유청약이나 청약의 유인의 형태 정도가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터넷폰(Internet Phone), 채팅(Chatting), 인터넷 화상회의와 같은 유형은 전술한 방식에 비해 그 형태의 특징이 뚜렷하다. 전술한 방식들은 발착의 동시성에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특징이 있는 반면, 이같은 유형은 발착의 동시성에 있어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임에 틀림없다. 인터넷 폰, 채팅, 화상회의 같은 유형은 대화자간 격지자간의 구별기준을 시간적 관념에서 분석한다고 보면 전화의 법리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는 의견에 있어 이견이 존재할 수 없다. 이같은 특징은 뒤에서 논의될 발신시점과 도달시점의 선정기준을 달리한다고 하더라도 발착의 동시성이 부정될 수 없는 유형일 것이다.

실질적으로 인터넷 무역거래상 계약체결을 위한 의사표시의 전달수단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은 전자메일(E-mail)이다. 인터넷 무역이 보편화될 미래에는 대부분의 참여기업은 하나 이상의 전자메일주소(E-mail Address)를 가지고 있을 것이며, 이러한 전자메일주소의 보유는 별다른 제약 없이 서로 의사를 편리하게 교환할 수 있어 널리 이용될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전자메일의 발신과 도달에 있어 시간적 동시성의 분석 여부는 상당히 중요한 사안일 것이다. 이러한 시간적 동시성은 발신시점과 도달시점에 관한 문제로 풀어야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발신시점과 도달시점의 기준을 전자메일(E-Mail)을 기준으로 설명하고자 하며 타 방식과의 비교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인터넷 의사표시의 발신시점

인터넷을 통한 의사표시의 전달에 있어 시간적 동시성이 부정된다는 것은 발신시점과 도달시점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견해이며, 이러한 경우 인터넷을 통한 의사 전달은 격지자간의 법리가 적용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간적 동시성은 정확한 발신시점과 도달시점의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인터넷의 의사표시의 발신시점은 우선적으로 해당 유형의 기술적 측면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즉 이러한 기술적 측면의 바탕을 토대로 관련 법규들을 통해 법적 측면에서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전자메일(E-Mail)의 경우 전술한 바와 같이 POP방식과 IMAP방식으로 분류될 수 있다. 우선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게 될 POP방식에 있어 그 발송과정의 기술적 분석이 필요하게 된다.

POP방식의 전자메일(E-Mail)은 보편적으로 송신자의 컴퓨터상의 전자메일 프로그램(E-Mail Program)을 통해 작성되며 되며 송신자가 해당 메일을 완전히 작성한 이후에 송신(Send) 또는 이러한 명령이 포함된 통합명령을 내렸을 때 발신작업이 시작되게 된다. 이 때 송신명령을 받은 전자메일은 송신자가 설정한 보내는 메일서버(SMTP Server)를 거쳐서 수신자의 받는 메일서버(POP Server)로 전송되게 된다. 이 경우에 있어 수신자의 받는 메일서버(POP Server)는 수신자의 전자메일주소(E-Mail Address)를 통해 인식하게 되어 있으며, 만일 수신자의 전자메일주소(E-Mail Address)가 잘못된 경우 송신자의 컴퓨터에서 순간적으로 전송된 것으로 여겨지지만, 이후 전자메일이 반송되어 오게 된다. 이같은 경우는 수신자의 전자메일주소의 오기, POP 서버의 하자 등으로 나타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송신자가 설정한 자신의 SMTP 서버에 하자가 발생하거나 잘못 기록된 경우에는 전자메일 자체가 발송되지 않는다.

POP방식의 전자메일의 경우에 발신시점은 송신자의 컴퓨터에서 전자메일이 송신된 시점으로 할 것인지, 송신자의 보내는 메일서버(SMTP Server)에서 메일이 송신된 시점으로 할 것인지, 수신자의 받는 메일서버(POP Server)에 메일이 기록(저장)된 시점으로 할 것인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IMAP방식의 전자메일(E-Mail)은 일반적으로 작성자가 IMAP 서버가 설치되어 있는 종계기관의 웹서버에 접근하여 별다른 설정 없이 웹상에서 직접 메일을 작성하게 되며 작성된 메일은 작성자가 보내기 단추(Send Button)를 누름으로써 송신명령이 서버에 주어지게 되고 이렇게 주어진 송신명령에 의해 송신자가 지정한 수신자의 메일서버에 메일이 전달되게 된다. 사실상 수신에 있어 POP방식과 IMAP방식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만, 송신은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지 않다. 이는 POP방식과 IMAP방식의 편지를 받기 위한 일종의 사서함의 성질을 나타내므로 자신의 편지를 받기 위한 서버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또한 POP방식의 전자메일을 이용하는 당사자도 웹을 통하여 메일을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송신상의 특별한 구별점을 두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IMAP방식의 전자메일형태도 POP방식의 전자메일형태와 마찬가지의 발신시점의 문제가 발생한다.

웹을 통한 전자게시판(Web BBS)이나 뉴스그룹(Usenet)의 경우는 발신시점에 있어 이견

이 존재하기 힘들다. 전자게시판의 경우 작성자는 직접 전자게시판이 위치한 웹서버에 접근하여 직접 작성하고 저장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전자메일(E-Mail)과는 달리 하나의 서버를 통해 의사전달되기 때문에, 작성자의 의사표시가 전자게시판이나 뉴스그룹이 존재하는 서버컴퓨터에 기록된 시점이 발신시점이 될 것이다.

인터넷 폰(Internet Phone), 인터넷 채팅(Internet Chatting), 인터넷 화상회의 등은 기존에 정립되어 있는 전화의 적용법리와 마찬가지로 적용될 것임에 틀림없다.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에서 제정한 「전자상거래 모델법」에서는 데이터 메시지의 송·수신과 관련하여 “작성자와 수신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데이터 메시지의 송신(발송)시점은 송신된 데이터 메시지가 작성자 또는 그 작성자를 대리하여 그 데이터 메시지를 발신한 대리인의 지배를 벗어나서 어떤 정보시스템에 들어간 때이다.”¹⁶⁾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어떤 정보시스템의 해석이 문제시 될 수 있는데, 전자게시판이나 뉴스그룹의 경우에는 해당 전자게시판이나 뉴스그룹 자체가 될 것이다.

그러나 E-Mail의 경우 송신서버(SMTP Server)를 지칭하는지, 수신서버(POP Server or IMAP Server)를 지칭하는지 모호하다고 볼 수 있다. UNCITRAL의 수신시점에 관한 규정과 비교해 보면 이는 수신서버(POP Server)를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사실상 송신서버(SMTP Server)는 송신자에게 메일 전달을 위한 하나의 통로를 제공해 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자료가 기록된다는 의미보다는 연결수단적 의미가 강하다. 특히 웹을 이용하여 메일을 전송할 경우 웹을 운영하는 서버의 운영체제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존재하겠지만 송신서버(SMTP Server)는 그 의미가 사라지게 된다. 그러나 수신자의 수신서버(POP Server)에 전자메일이 기록되는 시점은 전자메일의 도달시점으로도 간주될 수 있어 여전히 발신시점에 관한 문제는 전자메일(E-Mail)의 경우 문제시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수신자의 수신서버(POP Server)에 기록된 시점을 발신시점으로 간주하는 경우 전술한 전자메일주소의 오기에 의한 반송이나 수신자의 메일서버컴퓨터의 오류에 의한 메일 반송 시 전자메일의 발신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메일을 송신하기 위한 통로로서의 웹서버나 송신서버에서 메일이 송신된 시점을 발신시점으로 간주한다면 이는 전자메일이 발신되었지만 도달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 즉 송신서버(SMTP Server)에서 메일이 발송되고 수신자의 수신서버(POP Server)에 기록되지 않은 경우 메일은 반송되거나 서버컴퓨터에 남게 되지만, 송신자의 의사전달은 발신된 것으로 간주되고 도달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게 될 것이다.

한편 한국의 전자거래기본법에서는 송·수신시기에 관하여 “전자문서는 작성자외의 자 또는 작성자의 대리인외의 자가 관리하는 컴퓨터등에 입력된 때에 송신된 것으로 본다”¹⁷⁾라고 규정함으로써 UNCITRAL의 전자상거래모델법안을 그 모델로 삼고 있다. 또한 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보는 경우로서 “작성자의 대리인 또는 전자대행수단에 의하여 전자문

16) UNCITRAL 전자상거래 모델법 제13조 참조

17) 「전자거래 기본법」 제 9조 1항.

서가 송신된 경우 작성자가 그 전자문서를 송신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신자가 그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송신되었음을 당해 전자문서의 수신과 동시 또는 상당한 시간내에 통지받은 경우 2. 수신자가 소정의 확인절차를 따르거나 상당한 주의를 하였더라면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송신되었음을 알 수 있었던 경우”¹⁸⁾로 규정하여 작성자가 송신한 경우에 관한 규정을 추가로 두고 있다.

3. 인터넷 의사표시의 도달시점과 시간적 동시성

(1) 기술적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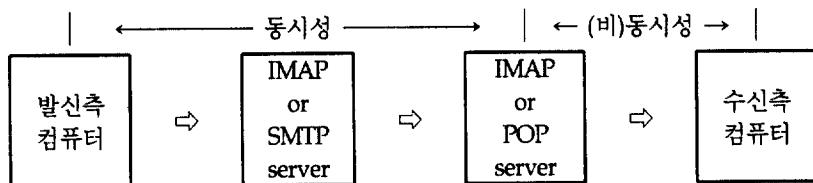
인터넷 의사표시의 도달시점은 이후 논의될 인터넷 무역계약시 승낙의 효력발생시점과 관련하여 도달주의가 선정되는 경우와 관련하여 중요하다. 특히 발신시점과 도달시점의 시간적 동시성을 분석하는데 있어 도달시점을 언제로 간주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전자적 의사표시의 경우 대화자간으로 간주하여 도달주의를 채택한다면 도달시점이 언제인가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안된다.

도달시점에 관해서는 이용형태에 따라 몇가지로 나누어 분석할 수 있는데, 몇몇 방식의 경우 도달시점이 문제시될 수 있다.

웹게시판(Web Board)을 이용하는 경우 게시판이 설치된 서버컴퓨터에 승낙의 의사표시가 저장 또는 기록되는 시점을 도달시점으로 간주할 것인지, 아니면 청약자의 사업장에 위치한 컴퓨터에서 해당 게시판이 위치한 서버컴퓨터에 접속하여 피청약자의 승낙의 의사표시를 청약자측의 컴퓨터상의 웹브라우저(Web Browser)를 통해 읽는 시점으로 간주할 것인지의 여부가 문제시된다. 또한 청약자측의 컴퓨터상 데이터가 들어온 시점으로 간주할 경우, 서버컴퓨터가 청약자측이나 중계자측에 존재하는지, 아니면 피청약자측에 존재하는지에 따라 도달시점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

전자메일(E-mail)은 POP E-Mail방식이든, IMAP E-Mail방식이든 수신자의 E-Mail 주소를 통해 전송되게 된다. 이 주소는 수신자의 메일계정이 포함되어 있는 POP Server나 IMAP Server를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전자메일(E-mail)의 경우 발신과 도달사이의 절차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III-1> 전자메일(E-mail)의 전송과정과 시간의 동시성



18) 「전자거래 기본법」 제 10조.

위의 경우에서 수신시점을 수신자의 POP Server 또는 IMAP Server로 할 것인지, 아니면 수신측 컴퓨터에 기록되는 시점으로 할 것인가가 문제시 된다.

만일 POP Server에 기록 또는 저장되는 시점을 도달시점으로 간주할 경우 발신시점과 도달시점간의 시간적 격차는 크게 존재하지 않으므로 시간적 동시성이 확보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수신측 컴퓨터에 기록 또는 저장되는 시점을 도달시점으로 간주할 경우 시간적 격차는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가 존재한다.

일반적으로는 POP Server와 수신측 컴퓨터간의 시간적 동시성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는 수신자가 전자메일을 읽기 위해서 서버컴퓨터에 접속하여 자신의 메일계정에서 메일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메일이 수신자의 메일계정에 기록된 시점과 수신자가 메일을 가져오는 시점상에 시간적 거리가 존재한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의 전자메일프로그램방식의 발전으로 기존의 방식과는 달리 메일프로그램을 실행시켜두는 동안은 상시 메일계정에 접속하여 메일이 POP서버의 계정에 기록되는 즉시 수신자의 컴퓨터로 가져오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러한 경우 엄밀히 말하자면 수신측의 컴퓨터가 메일서버의 계정을 주기적으로 체크하면서 메일을 확인하여 가져오게 되므로 송신과 수신사이에 약간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게 된다. 그러나 수신측의 컴퓨터가 메일계정을 체크하는 주기사이의 시간이 미세한 경우, 수신측은 시간적 간격을 크게 느끼지 못한다. 따라서 전자메일을 이용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전달할 때, 도달시점을 수신측 컴퓨터상에 해당 의사표시가 기록된 시점으로 간주한다면, 수신측 컴퓨터가 자신의 메일계정에 접속하는 형태에 따라 동시성이 결정될 수 있으므로 논란의 여지가 존재한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우 전자메일 운용상의 차이점을 보일 수 있는 바, 자신의 웹사이트를 관리하는 대기업의 전자메일계정은 대부분 자사에서 자체적으로 구축된 서버 컴퓨터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이처럼 해당 서버컴퓨터가 자사의 일부인 경우, 수신측의 메일서버계정에 접속한 순간을 도달시점으로 간주해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의 경우는 웹사이트를 호스팅(Hosting)서비스를 통해서 운영하게 되므로 서버컴퓨터가 수신측의 일부인지가 문제시된다.

통신수단의 시간적 동시성에 있어 최근의 모든 전자적 의사표시를 도달시점을 기준으로 한 발착의 동시성을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본고에서 현재 이용되는 전자적 의사표시의 유형별로 분석해 보았는데, 일단 현재 이용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통신망 전자자료교환(VAN EDI)와 전자게시판(Web Board or BBS), 전자메일(E-Mail)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다만 여기에서 제외된 것 중 인터넷 전화(Internet Phone), 채팅(Chatting), 화상회의(IRC) 등은 대화자간의 법리를 적용하는데 있어 문제의 소지가 없을 것으로 여겨지므로 제외한다.

도달시점을 기준으로 한 전자적 의사표시의 동시성을 분석하여 보면 다음의 <표III-2>와 같이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표III-2> 전자적 의사표시의 도달시점기준에 따른 적용법리 분석

분석 이용수단	도달시점기준	서버의 위치	발송의 동시성	적용법리
VAN EDI	mail box에 기록	중계VAN사업자	○	대화자간
	수신측 컴퓨터에 기록	증정VAN사업자	×	격지자간
Web Board (Usenet)	게시판에 기록	무관	○	대화자간
	수신측 컴퓨터에 기록	증정/송신측	×	격지자간
		수신측	○	대화자간
E-Mail	POP 메일계정에 기록	무관	○	대화자간
	IMAP메일계정에 기록	수신측과 격리	×	격지자간
	수신측 컴퓨터에 기록		○	대화자간

(2) 법적 측면

전자적 의사표시의 도달시점에 관하여 최근의 전자거래법규들의 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UNCITRAL 모델법의 데이터 메시지의 송·수신 장소와 시간에 관한 규정 제 2항에서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수신시점은 다음에 의하여 결정된다. (a) 수신자가 데이터 메시지 수신을 위한 독자의 정보시스템을 지정한 경우, (i) 데이터 메시지가 지정된 정보시스템에 들어오거나, (ii) 지정된 정보시스템이 아닌 수신자의 다른 정보시스템으로 데이터 메시지가 송신된 경우에는 수신자에 의하여 데이터 메시지가 취득된 때가 데이터 메시지의 수신시점이다. (b) 수신자가 정보시스템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수신자의 정보시스템에 들어간 때가 수신시점이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특정의 정보시스템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 수신측 컴퓨터에 기록된 시점을 도달시점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대화자간의 법리가 부정될 수도 있는 문제가 존재한다.¹⁹⁾

국내의 경우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 15조에서 “…전자문서는 사업자의 컴퓨터 파일에 기록된 후 상대방의 컴퓨터 파일에 기록된 때에 그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수신측 컴퓨터에 기록된 시점을 도달시점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전자거래기본법의 제 9조 제 2항에서는 “전자문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 수신한 것으로 본다. 1. 전자문서가 수신자가 지정한 컴퓨터에 입력되었을 때 또는 지정한 컴퓨터가 아니더라도 수신자가 이를 출력한 때 2. 수신자가 전자문서를 수신할 컴퓨터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신자가 관리하는 컴퓨터의 하나에 입력된 때”라고 규정함으로써 UNCITRAL 모델법의 내용과 차이를 두지 않고 있다.

최근의 전자거래와 관련된 법규들은 도달시점에 관해 수신자가 지정한 컴퓨터 혹은 수신자의 관리하에 있는 컴퓨터에 입력된 시점을 도달시점으로 간주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규정을 지닌 대부분의 법규들은 효력발생시점에 관해서는 한결같이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은 송·수신의 동시성을 완전히 인정한다고 보기보다는 이미 대다수의 국

19) 다만 UNCITRAL 모델법에서는 효력발생시점에 관하여 도달주의를 명시하고 있다.

내법들이 효력발생시점의 기본주의로서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비엔나협약 등에서 모든 경우에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이러한 영향이 미쳤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격지자간의 승낙의 의사표시에 있어 발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법리상 격지자간인지 대화자간인지의 구분이 여전히 문제시된다.

앞으로의 인터넷 무역거래시의 계약체결방식으로 보편화될 전자메일(E-Mail)은 앞서 분석하였듯이 송신자측의 컴퓨터에서 보내어진 승낙의 의사표시가 송신메일서버를 거쳐 수신메일서버에 실시간(real time)으로 전송이 되어지지만, 수신메일서버에서 수신자측의 컴퓨터에 기록되어지는 시점의 동시성은 부정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수신메일서버(POP server)를 수신자 관리하의 컴퓨터로 해석하는 데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웹서버(Web Server)²⁰⁾를 직접 자신 소유의 서버컴퓨터를 통해 구축하고 자신 소유의 IP(Internet Protocol)를 통해 운용하는 일부 대기업의 경우는 수신메일서버(POP server)를 수신자 관리하의 컴퓨터로 간주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중소기업의 경우처럼 특정 ISP(Internet Service Provider)의 서버컴퓨터를 통해 웹서버를 운용할 경우에는 수신자 관리하의 컴퓨터로 간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수신자의 컴퓨터에 기록 또는 입력되는 시점을 도달시점으로 간주한다는 것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전자메일(E-mail)의 경우 수신메일서버(POP server)는 현실적으로 중계기관의 컴퓨터로 간주하기보다는 수신자측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여겨진다.

유럽의 전자상거래에 관한 입법지침초안은 도달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발송되어 그 상대방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가능성만 있으면 되고 실제로 그 내용을 확인할 필요는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E-Mail을 이용한 의사표시의 도달시점과 관련하여 반드시 수신자가 조작하는 컴퓨터를 지칭한다기 보다는 수신자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가능성의 존재, 즉 수신측의 메일서버에 E-Mail이 기록된 시점으로 간주할 수도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도달시점에 관련한 또 다른 근거로써 전자메일을 통해 의사표시를 송신하는 송신자는 수신자의 E-Mail 주소를 통해 전송하게 된다. 이때 수신자의 E-Mail 주소는 수신자의 수신메일서버의 계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송신자는 정당한 방법으로 송신하기 위하여 수신자를 통해 수신자의 E-Mail 주소를 지시받았을 것이며, 이러한 지시는 관련법규들이 규정하고 있는 “수신자가 지정한 컴퓨터”로 간주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즉 E-Mail 주소를 가르쳐 주는 행위는 우편주소를 가르쳐 주는 것과 같이 도달장소를 지정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존재하는데, 만일 그와 같은 효력을 지니는 것으로 추인된다면 받는 메일서버(POP3 계정), 웹메일서버(IMAP 계정), 메일계정(Mail Box)에 들어오는 시점을 도달시점으로 간주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결론적으로 필자의 견해는 인터넷 무역거래시 승낙의 의사표시의 도달시점은 수신측에

20) 인터넷메일의 전송은 메일서버를 기준으로 생각되어야 하나 대부분의 웹서버에 메일서버를 같이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해의 편의상 웹서버로 설명하기로 한다.

준하는 서버컴퓨터에 입력 또는 기록되는 시점으로 간주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며, 수신자가 서버컴퓨터에 접속하여 해당 기록을 읽는 행위는 요지시점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인터넷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점은 이러한 점을 감안해 볼 때 시간적 동시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영미법, 일본법 또는 우리 나라법이 준거법으로 채택되는 경우에 대화자간으로 간주하여 도달주의의 입장을 취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IV. 인터넷 무역계약의 계약성립시점의 고찰

1. 무역계약의 성립시기

계약은 청약(Offer)과 승낙(Acceptance)으로 이루어진다. 계약의 성립시기에 관해서는 승낙의 효력발생시점으로 정하고 있다. 이 경우 승낙의 의사표시가 피청약자(offeree)로부터 발송되어서 청약자(offeror)에게 도달될 때까지의 과정 중에서 어느 시점을 효력발생시점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가 발생한다.

승낙의 효력발생시점을 이론적으로 살펴보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청약자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피청약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발신될 때에 계약이 성립된다고 보는 발신주의, 둘째 피청약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된다고 보는 도달주의, 셋째 단지 물리적으로 승낙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청약자가 그 내용을 알았을 때에 계약의 성립을 인정하는 요지주의가 있다. 영미법과 대륙법계에서는 승낙의 일반원칙으로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²¹⁾, 몇몇 국가의 법률은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발신주의를 인정하고 있다.²²⁾ 승낙의 효력발생시점에 대해서 각국의 법률의 견해를 살펴보는 것은 인터넷무역거래시의 승낙효력발생시점을 분석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구체적으로 각국별로 승낙효력발생시점을 살펴보면 영국법, 일본법과 한국 민법은 대화자간의 계약과 격지자간의 계약을 구분하여 대화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즉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를 발신한 때, 즉 발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한편 독일법, 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UNCCIS)²³⁾, 국제상사계약에 관한 UNIDROIT원칙(The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1994)²⁴⁾에서는 승낙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 대화자간, 격지자간의 구분없이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21) 新堀聰, 「貿易取引入門」, 日本經濟新聞社, 1992 p. 34.

22) 이탈리아, 이집트 등에서는 요지주의가 채택되기도 한다.

23) 제 18조 2항

24) 제 2조 및 제 6조 2항.

미국법의 경우에는 영국법과 마찬가지로 대화자간에는 도달주의를, 격지자간에는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으나 제2차 계약법 리스트레이트먼트와 판례를 통하여 볼 때 대화자의 범주인 전화와 텔레스에 의한 승낙은 발신주의를 택한 사례도 있다.²⁵⁾

<표 III-1> 승낙의 의사표시에 대한 효력발생시기

준거법 통신수단		한국법	일본법	영국법	미국법	독일법	비엔나협약
일반원칙		도달주의	도달주의	도달주의	도달주의	도달주의	도달주의
승 낙 의 의 사 표 시	대 화 자 간	도달주의	도달주의	도달주의	도달주의	도달주의	도달주의
	전 화	도달주의	도달주의	도달주의	도달(발신)주의	도달주의	도달주의
	텔레스	도달주의	도달주의	도달주의	도달(발신)주의	도달주의	도달주의
	격 지 자 간	우 편	발신주의	발신주의	발신주의	도달주의	도달주의
	전 보	발신주의	발신주의	발신주의	발신주의	도달주의	도달주의

팩시밀리에 관해서는 별다른 언급은 없으나, 현재 몇몇 연구에서 텔레스와 동일한 개념으로 간주하여 대화자간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는 경향이 있다.

2. 인터넷 무역거래의 계약성립시기

전자적 의사표시의 계약성립시점에 관한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대화자간으로 간주하는 의견과 격지자간으로 간주하는 의견이 대립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제시된 근거와 주장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이에 대하여 기존 연구의 견해 중 도달주의 지지론을 분석해 보면 Ian Walden 교수는 EDI의 경우 텔레스와 같이 “real time”메시지 시스템이 적용되어야 한다²⁶⁾고 보고 있다. Michael S. Barm이나 Henry H. Perritt. JR.의 경우에도 격지자간인지 대화자간인지의 판단기준은 거리적, 장소적 관념에 의해서가 아니라 시간적 관념에 의해서 판단해야 할 문제인데 EDI에 의한 경우에는 VAN을 통하여 전자적 통신방법으로 데이터의 전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승낙통지의 발신과 도달이 거의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써 시간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²⁷⁾ Benjamin의 경우도 EDI에 의한 구체적인 매매계약성립시기는 VAN을 이용한 경우 청약자가 연락방법으로 데이터를 입력

25) 新洲 聰, 前揭書, p. 35-38, p. 43; St. Paul, "American Law Institute", *Restatement of the Law, Second Contract*, 2nd ed., 1981, § 63-64.

26) Ian Walden, *EDI and The Law*, London, Blenheim Online Ltd., 1989, p. 46.

27) Michael S. Barm and Henry H. Perritt. JR., 전개논문, p. 324.

시켜 VAN의 메일박스(mail box)에 기억되었을 때 청약의 의사표시가 행해진 것으로 보고, 한편 피청약자가 VAN의 메일박스에 조회방법으로 데이터를 취득하여 그 승낙의 메시지를 VAN의 메일박스에 기억시켰을 때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하여 도달주의를 지지하고 있다.²⁸⁾

국내의 경우도 강원진 교수는 “팩시밀리나 EDI는 대화자간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²⁹⁾고 하여 도달주의를 지지하고 있으며, 이진우 변호사는 전자문서가 전송속도가 동시에 적이며 실시간 서비스에 가깝다는 사실을 들어 전자계약을 대화자간의 약정으로 간주하여 도달주의가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³⁰⁾ 다만 최근의 전자적 의사표시의 수단이 발전하여 VAN EDI 이외에 다른 방식도 존재하게 되어 모든 전자적 의사표시를 VAN EDI의 법리로만 간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전자적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점에 관해서 격지자간의 원리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아직 실시간(real time)전송서비스는 보편적으로 확립되지 않은 실정이므로 전자적인 의사표시가 격지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단정할 경우, 발신주의가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³¹⁾는 견해가 존재한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제공자와 컴퓨터는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거나, 사람과 사람간의 직접적 통화나 신호에 의하지 않기 때문³²⁾이라는 견해도 존재한다.

기존의 연구를 분석해 보면 첫째, 모든 전자적 의사표시를 같은 범주에서 바라보았다는 점이다. 대화자간의 법리를 적용하는 대다수의 연구는 VAN EDI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물이다. 또한 격지자간의 법리를 적용하는 견해들은 대화자간 또는 격지자간의 판단기준을 시간적 동시성으로 두지 않았거나 또한 시간적 동시성으로 간주한다 하더라도 송신자와 수신자간의 실시간은 부정된다고 서술하고 있다.

둘째, 전자적 의사표시의 도달시점에 관한 분석이 미흡했다. 대화자간 또는 격지자간 법리적용의 판단기준을 시간적 동시성으로 간주하는 견해가 많은 편인데, 동일한 기준을 설정하고도 대화자간의 법리주장과 격지자간의 법리주장이 대립되고 있다. 이는 도달시점에 관한 의견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인터넷을 통한 승낙의 의사표시는 POP Server 또는 IMAP Server를 이용한 E-Mail, Web Server를 기본으로 하는 Web Board, Usenet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각각의 경우에 간주방식은 3장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28) Benjamin Wright, *The Law of Electronic Commerce*, Little Brown and Company, 1991, pp. 261-265 참조

29) 강원진,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승낙의 효력”, 「양영환박사회갑기념 무역상무의 제문제」, 한국무역상무연구회, 1994. p. 101.

30) 이진우, “전자거래의 법적 검토”, 「한국정보법학회 세미나 자료」, 1996. 12., p. 141.

31) 김종칠, “전자상거래계약의 성립·이행·종료에서의 법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 14권 제 1호, 한국국제상학회, 1999, p. 294.

32) 오병철, 전개논문, p. 131.

인터넷을 통한 승낙의 의사표시는 수신측의 지정된 서버컴퓨터에 도달된 시점에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는 시점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즉, 인터넷 승낙의 의사표시는 대화자간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하며, 이때 도달시점은 수신자가 조작하는 컴퓨터가 아닌 수신측에 지정된 서버컴퓨터가 되어야 한다. 인터넷 승낙의 의사표시의 도달은 수신자가 반드시 수신된 의사표시를 확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확인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수신측 서버컴퓨터에 도달하면 되는 것이다. 또한 추가적으로 수신자가 송신자에게 고지한 수신자계정이 존재하는 서버를 나타내는 E-Mail 주소나 웹게시판이 존재하는 웹서버컴퓨터를 나타내는 웹사이트 주소 또는 뉴스그룹(Usenet)의 주소 등이 수신자 스스로 송신자에게 의사표시의 도달장소를 지시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V. 결론

인터넷 무역은 기존의 무역방식에 비해 신속성, 편리성, 저렴성 등으로 인해 많은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여겨진다. 인터넷 무역은 인터넷 offer 사이트나 Web EDI 사이트 등을 통해 차츰 그 유통이 들어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인터넷 무역계약체결은 인터넷 무역의 다른 절차에 비해 우선적으로 현실화되어 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해석이 필요한 실정이다.

무역계약의 성립시점의 승낙의 효력발생시점이며, 승낙의 효력발생시점은 기본적으로 도달주의 입장을 견지하지만 한국, 일본, 영국, 미국 등의 국가에서는 대화자간, 격지자간으로 분류하여 대화자간은 도달주의를 격지자간은 발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무역계약의 승낙 의사표시는 그 기술적 특성으로 인하여 적용법리에 있어 대화자간의 법리적용과 격지자간의 법리적용의 의견이 대립되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UNCITRAL에서 규정한 전자상거래 모델법은 계약의 효력발생시점에 관해 언급하고 있지는 않으나 비엔나협약의 견해와 마찬가지로 계약의 효력발생시점에 있어서 도달주의를 당연시하고 있다. 현재 몇몇 국가에서 제정한 전자상거래 관련 법규들도 대부분이 계약효력발생시점을 도달주의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국내의 모든 전자문서와 관련되어 적용될 기본법이지만 인터넷을 통한 무역거래에서도 그대로 적용될지는 의문시된다.³³⁾ 또한 도달주의로 채택된다고 하더라도 명확한 도달시점에 관한 해석이 필요하다.

본 논문을 통해 제시되는 견해는 인터넷을 통한 승낙의 의사표시는 각국의 국내법규가 적용된다 하더라도 대화자간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인터넷 의사전달은 발신시점과 도달시점의 시간적 동시성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대화자간의 법리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도달시점에 관하여 수신측의 서버컴퓨터에 도달된 시점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33) 이는 준거법의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필자는 추가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국제거래에 관한 통일법이 새롭게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즉 수신자가 송신자에게 고지한 특정의 주소에 의해 의사를 전달받게 되므로 그러한 특정의 주소에 의사표시가 기록된 시점이 도달시점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는 모든 인터넷 의사표시의 전달에 적용되어야 한다. 즉 Hosting, 중계자의 웹서버, Usenet같이 수신측의 서버컴퓨터가 수신자 관리 밖에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서버컴퓨터에 기록된 시점이 유효한 도달시점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원진,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승낙의 효력”, 「양영환박사회갑기념 무역상무의 제문제」, 한국무역상무연구회, 1994.
- 김종칠, “전자상거래계약의 성립·이행·종료에서의 법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 14권 제 1호, 한국국제상학회, 1999.
- 최석범, “글로벌전자무역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14권 제1호, 한국국제상학회, 1999.
- 이진우, “전자거래의 법적검토”, 「한국정보법학회 세미나 자료」, 1996.
- 이상진·이충배 공저, 「전자상거래 이해와 활용」, 두남, 1999.
- 최경진, 「전자상거래와 법」, 현실과 미래, 1998.
- 박복재, “전자상거래 관련법 비교연구”, 「1999년도 하계학술발표대회 학술발표논문집」, 한국국제통상정보학회, 1999.
- 오병철, “전자적 의사표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 財經詳報社, 「金融情報システム白書」, 平成10年版.
- 新堀聰, 「貿易取引入門」, 日本經濟新聞社, 1992.
- Benjamin Wright, *The Law of Electronic Commerce*, Little Brown and Company, 1991.
- Brisch, EU-Richtlinievorschlag zum elektronischen Geschäftsverkehr, CR 1999.
- Hoeren, Vorschlag für eine EU-Richtlinie über E-Commerce, MMR 1999.
- Ian Walden, EDI and The Law, London, Blenheim Online Ltd., 1989.
- Lehmann, Rechtsgeschäfte und Verantwortung im Netz - Der Richtlinievorschlag der EU-Kommission, ZUM 1999.
- Maennel, Elektronischer Geschäftsverkehr ohne Grenzen - der Richtlinievorschlag der Europäischen Kommission, MMR 1999.
- Micheal S. Baum and Henry H. Permitt, “Electronic Contract”, Publishing and EDI Law, willy publishing, 1991.
- Spindler, Verantwortlichkeit von Dienstanbietern nach dem Vorschlag einer E-Commerce-Richtlinie, MMR 1999.
- St. Paul, “American Law Institute”, Restatement of the Law Second Contract, 2nd ed., 1981.

Waldenberger, Electronic Commerce : der Richtlinienvorschlag der EG-Kommission,
EuZW 1999.

www.tradebiz.net

www.ali.org/ali/pr040799.htm